

문신사법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문신 단일면허·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함(제명).
-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동일하게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문신사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안 제8조).
-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진단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문신행위로 인한 문신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안 제21조 및 제24조).
-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5장 및 제7장).

-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안 부칙).

II. 검토의견

1. “문신제거행위” 정의 규정 추가 필요 (안 제8조 관련)

- 제정안은 안 제8조제3항에서 문신사의 문신제거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한 안 제9조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¹⁾에서 문신사가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및 문신업소 폐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신제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신제거행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8조(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③ 문신사는 <u>문신 제거행위를</u>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③ 문신사는 <u>문신제거행위(제2조제1호에 따른 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u> 해서는 아니 된다.

1) 안 제8조(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③ 문신사는 문신 제거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 제거행위를 한 경우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 제거행위를 한 경우

2. 면허취소 사유로 “위급상황시 조치의무” 미이행 추가 필요 (안 제9조 관련)

- 제정안 제18조제1항제6호는 문신업자에게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위급상황시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신업소의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한편, 동 제정안은 문신사 면허를 가진 “문신사”와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문신업자”를 구별³⁾하고 있어, 일정한 문신업소에 문신업자 이외에 고용 등의 방식으로 다른 문신사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므로 만약 문신업소에 고용된 문신업자 아닌 문신사가 위 위급상황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에 대해 대물적인 제재처분인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만을 명할 수

2) 안 제18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① 문신사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소”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

4. “문신업자”란 제11조에 따라 문신업소를 등록하고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있을 뿐 해당 “문신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와 같은 대인적인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위급상황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문신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9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10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u>10.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u>

3. 무면허 문신행위 금지 규정 보완 등 필요 (안 제10조 관련)

- 제정안 제10조제1항은 문신사가 아니면 제2조제1호의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안 제10조제1항)을 문신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제1항4)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문신사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 따라 문신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법」상 의사의 의료행위⁵⁾에 해당하는 문신행위는 이 법과 별도로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임.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의 단서를 추가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 제10조제4항은 문신사 면허증 양도·양수 및 대여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 문신행위의 경우에도 면허증 대여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로 동일하게 알선이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은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4) 안 제8조(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①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5)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0조(무면허자의 문신행위 등 금지) ① <u>문신사가 아니면</u> 제2조제1호의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u><단서 신설></u> ②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u>제2항 및 제3항에서</u>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① <u>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u> 제2조제1호의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u>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누구든지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u>선</u>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문신업소 종사 제한 규정 보완 필요 (안 제17조 관련)

- 제정안 제17조⁶⁾는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문신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신사의 건강진단 및 종사 제한 규정은 질병보유자의 문신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한 취지임.
- 다만, 안 제17조는 문신사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확인된 문신사의 종사 제한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해당 문신사가 질병으로부터 완치된 경우 다시 문신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문신사가 건강진단에서 질병이 확인된 경우 그 완치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음 건강진단 시기(1년 후)까지 문신업소에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문신사들이 건강진단 자체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진단을 받을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확인된 문신사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완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문신업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

6) 안 제17조(건강진단) ①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문신업소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문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건강진단 항목, 실시 방법과 실시 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7조(건강진단) ①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u>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u>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u>인정되는 사람</u>은 문신업소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문신업자는 <u>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건강진단 항목, 실시 방법과 <u>실시 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강진단) ①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u>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u>판정되는 사람</u>(다만, <u>판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문의가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u>)은 문신업소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문신업자는 <u>제2항에 따른 사람</u>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건강진단 항목, 실시 방법과 <u>실시 기간,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및 완치 기준 등은</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대물적 제재처분 규정의 보충 필요 (안 제26조 및 제27조)

-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신업자가 위법행위 또는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와 같은 대물적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 제정안은 문신사 면허를 가진 “문신사”와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문신업자”를 구별⁷⁾하고 있어, 일정한 문신업소에 문신사인 문신업자 이외에 고용 등의 방식으로 다른 문신사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대물적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법문상 “문신업자”의 범위반행위만을 그 부과 근거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문신업자”에게 고용 등의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신사”의 범위반행위도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대물적 제재처분의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안 제26조 및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6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u>문신업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6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u>문신업자 또는 그가 운영하는 문</u>

7)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소”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

4. “문신업자”란 제11조에 따라 문신업소를 등록하고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안 제26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 정 안	수 정 의 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기간</u>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문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u> (각 호 생략)	<u>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사(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8)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신업자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각 호 생략)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문신업자 또는 그가 운영하는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사(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유9)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신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u> (각 호 생략)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음에도 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한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9조에 따라 문신의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문신업소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
- 9) 안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 제거행위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가 아닌 사람에게 문신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5.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 문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필요 (안 제36조제3항 관련)

- 제정안 제36조제3항은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문신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허를 받아서 현재 유효한 상태에 있는”이라는 뜻은 면허발급이 무효이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도 여기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¹⁰⁾, 문신사가 면허정지 기간 중 문신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면허정지 기간 중 문신행위를 안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처벌규정(안 제36조제3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9. 문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여기서 ‘면허를 받은’이라는 말은 ‘면허를 받아서 현재 유효한 상태에 있는’이라는 뜻이며, 면허발급이 무효이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역시 여기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법의 연혁을 보면 업무정지제도가 면허자격정지제도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업무정지제도가 의료인 자격은 유지시키면서 의료행위의 수행만을 제한하는 제도라면 면허자격정지제도는 의료인 자격 자체를 한시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의료법이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가 면허자격정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의 의료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면허자격이 정지된 상태의 의료행위가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로서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생략)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처분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을 한시적으로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한 사람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문신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삭 제>

7. 공포 후 시행일까지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한 법집행 기준 문제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 2025. 9.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호 및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7조제1항¹¹⁾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¹²⁾¹³⁾이나, 최근 하급심의 경향은 유·무죄로 판단한 사례¹⁴⁾가 각각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2헌마361 전원재판부 결정

1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원심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여, (생략) 살피건대, 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생략)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13) 한편, 현재 2011도15611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사되고 있는 상황임.

14) 대구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고합130, 2023고합655(병합) 판결(제1심, 국민참여재판 실시)의 경우 눈썹문신시술을 한 비의료인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부정의료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노1306 판결은 눈썹과 헤어라인 문신시술을 한 비의료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청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19고단1550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은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부가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선례가 변경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

- 다만, 해당 결정 중 위 법정의견에 대한 4인의 반대의견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하여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의료법」 제27조제1항 중 ‘의료행위’ 가운데 문신시술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음.

○ 제정안 제3조는 문신사의 면허·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안 제8조제1항은 문신사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 법 시행 시점, 즉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비의료인 중 면허를 받은 문신사의 문신행위가 허용되게 됨.

- 뿐만 아니라, 안 부칙 제2조¹⁵⁾에 따르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¹⁶⁾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수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문신사 면허 없이도 문신업소 개설 및 문신행위가 허용됨.

- 따라서, 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방식이 대폭 변화될 예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이 법 공포 후 시행일까지 이루어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제정안의 공포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규율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법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안 부칙 제2조(문신사 면허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시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제11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는 것
- 3. 제16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을 것
-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을 것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제16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을 것
- 3.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등록 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문신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시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제11조에 따른 개설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임시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16) 예를 들어, 제정안이 2027. 1. 1. 공포된다면 시행일은 2029. 1. 1.이고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은 2031. 1. 1.임.

8.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문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부칙 제2조의 경우 문신업소의 “임시등록”에 관한 사항이 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제2조(문신사 면허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u>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시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제11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4. 제17조에 따른 <u>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을 것</u>	부 칙 제2조(문신사 면허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u> 1. ~ 3. (제정안과 같음) 4. 제17조에 따른 <u>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u>

제 정 안	수 정 의 건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문신업소에서 문신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16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을 것 3.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등록 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문신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시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제11조에 따른 개설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임시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Ⅲ. 관계 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는 제정안에 대해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법원행정처는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안 부칙 제1조)로, 따라서 제정안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이루어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는 안 제3조17)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법원행정처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문신행위에 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따라 안 부칙 제3조18)의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¹⁹⁾²⁰⁾

(전문위원 박 혜 진)

17)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신사의 면허·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8) 안 부칙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19) 법원행정처는 만약 이 법 시행 전에 한 문신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일이나 면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함.

20)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시등록시에도 안 부칙 제3조와 같은 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